

기부장려금단체 해당 요건충족 여부 보고서

1. 단체 인적사항

단체(법인)명		비영리민간단체 (사업자)등록번호	
대표자 성명		기부장려금단체 지정일	
소재지		인터넷 홈페이지 주소	

2. 해당 요건충족 여부

의 무	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
가.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	
나.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에 따라 작성·보관하며,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「소득세법」 제160조의3제3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할 것	
다. 「소득세법」 제165조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	
라.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통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할 것	
마.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	
바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	
사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(제5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1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것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71조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충족 여부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[단체(법인)의 직인] (인)

국세청장 귀하

작성 방법

-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장려금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장려금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.
- ① 해당 요건충족 여부란에는 "○" 또는 "×"를 기재합니다.